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39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호연 의원 (찬성자 24명)

나.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라. 상 정 일 :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호연의원)

가. 제안이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25.4.5. ~ 4.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비위 등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지적해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생 략)	제24조(감사위원회 규정) (생 략)
제24조(준용) (생 략)	제25조(준용) (생 략)

○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사업을 통해 각급 기관의 책임행정 구현과 비리 예방 및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 관련 포상 사업 개요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취 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조성	자율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부서)별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취약기관은 개선을 유도
평가대상	전 부서(감사위원회 제외)	
대상기간	1년	
포상 및 표창 ('24년 기준)	우수기관 및 직원 시장표창 및 부상 수여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 출처 : 2024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계획 방침서 발췌

- 두 사업은 과거부터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조직 내부통제를 제고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기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 내지 700만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음.

※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행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내역(2020~2024년)〉

연도	포상금 예산 편성액 (집행액)	수상 등급 (기관 수)	기관명(포상금액)
2020	총예산:600만원 (집행액:600만원)	최우수(1)	보건환경연구원(2백만원)
		우수(3)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남부수도사업소 (각 1백만원)
		장려(4)	시민건강국, 서울역사박물관,중랑소방서, 강서수도사업소(각 25만원)
2021	총예산:600만원 (집행액:600만원)	최우수(1)	소방재난본부(2백만원)
		우수(4)	서북병원, 광진소방서,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각 1백만원)
2022	총예산:600만원 (집행액:600만원)	최우수(1)	소방재난본부(2백만원)
		우수(4)	성북소방서, 서부도로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각 1백만원)
2023	총예산:600만원 (집행액:600만원)	최우수(1)	소방재난본부(2백만원)
		우수(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성동소방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각 1백만원)
2024	총예산:600만원 (집행액:600만원)	최우수(1)	서울아리수본부(3백만원)
		우수(1)	성북소방서(150만원)
		장려(3)	재무국, 강동수도사업소, 소방재난본부(각 50만원)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내역(2020~2024년)〉

연도	포상금 예산편성액 (집행액)	수상 등급 (기관 수)	부서명(포상금액)
2020	총예산:700만원 (집행액:680만원)	최우수(2)	서울기록원, 소방감사담당관(각 150만원)
		우수(4)	도로시설과, 수도자재관리센터, 민생수사1반, 어린이병원 간호부(각 50만원)
		장려(6)	서울역사편찬원, 농업기술센터,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도시관리과, 서북병원 약제부, 은평병원 간호부(각 30만원)
2021	총예산:700만원 (집행액:660만원)	최우수(2)	도시계획과, 소방행정과(각 100만원)
		우수(4)	균형발전정책과, 민방위담당관, 중부수도사업소, 어린이병원 간호부(각 70만원)
		장려(6)	물순환정책과, 건설혁신과, 평생교육과, 식품의약품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서북병원 진료부(각 30만원)
2022	총예산:700만원 (집행액:660만원)	최우수(2)	교육지원정책과,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각 100만원)
		우수(4)	기술심사담당관, 민방위담당관, 동부수도사업소, 공무원수련원(각 70만원)
		장려(6)	동북권사업과, 홍보담당관, 경제수사대, 어린이병원 간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각 30만원)
2023	총예산:700만원 (집행액:700만원)	최우수(2)	건설혁신과,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각 120만원),
		우수(4)	38세금징수과, 자치경찰지원과, 북부도로사업소,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각 70만원)
		장려(6)	노동정책담당관, 경제수사대, 도심재창조과,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각 30만원)
2024	총예산:700만원 (집행액:700만원)	최우수(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300만원)
		우수(2)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서울대공원 관리부 (각 100만원)
		장려(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무국 세무과,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각 50만원)

○ 다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예산편성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포상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해당 포상금 예산 편성 시 법령이나 조례상의 명시적 근거 없이 관행적(내부 방침 또는 규칙에 근거 등)으로 추진해 왔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발췌 〉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포상금 사업 최초 시행 연도 및 근거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 2009년 이전부터 시행,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방침)'
  (감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자료 폐기 등으로 인해 최초 시작연도 확인 어렵다고 밝힘.)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2015년부터 시행,「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이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의 시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상금은 개선이 필요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본 개정안은 상기 지적사항 등 그간 지적된 감사위원회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포상금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감사위원회는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 감사, 시민인권 증진, 투자·출연기관 비리 예방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오랜 기간 공직기강과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법령위반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포상금 편성 및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포상금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호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39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 서호연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ㆍ석,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최민규, 허ㆍ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포상 등)에 따라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대상 표창 및 포상금 지급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예산설명서 등 확인결과 기추진사업[1]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2025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20,500천원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직기강확립 추진 10,500,000원	=	10,500천원
포상금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	10,000천원
	- 최우수기관 3,000,000원*1개 기관	=	3,000천원
	- 우수기관 2,000,000원*2개 기관	=	4,000천원
	- 장려기관 1,000,000원*3개 기관	=	3,000천원

자료 : 2025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업설명서